

지역의무공동도급 확대에 따른 예규개정

- ◆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확대적용에 따라 지역업체 요건 및 참여비율을 규정한 관련예규 정비
 - 지역업체 요건: 입찰공고일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
 - 지역업체 참여비율: 30%에서 40%(툰키·대안입찰은 20%) 이상으로 상향조정

1. 추진 배경

- 지역건설업체 지원을 위해 혁신도시사업에 대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
 - 당초 4대강 사업에 한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확대 적용하였으나 2010.12.31.자로 일몰 종료

<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>

- ① 근거: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2조제3항
- ② 내용: 지역업체의 공공계약 참여를 확대(지역업체 우대)하기 위해 사업지역 소재 업체가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한해 입찰참여 허용
- ③ 대상: 고시금액(국가 95억, 공공기관 284억) 미만 사업에 적용되며, 예외적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사업은 금액제한 없이 적용
 - * 4대강 사업('09.6.29.)과 혁신도시사업('10.12.6.)을 각각 고시하였으며 4대강 사업은 '10.12월말까지, 혁신도시사업은 '11.12월말까지 적용

- 지역의무 공동도급(지역우대 혜택)에 참여하기 위한 타 지역 건설업체의 일시적 진입을 방지할 필요
 - * 4대강 사업 시행시에도 지역업체의 참여요건을 강화한 바 있음
 - 지역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참여지분비율을 상향조정

2. 주요 내용

① 지역업체 참여요건 강화

-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에 한해 입찰참가 허용
-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발주하는 혁신도시사업에 적용
 - 일반사업의 경우 발주예측이 어려워 일시적인 전·출입에 대한 규제(제한)의 실익이 적으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
- * 일반사업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이전하면 입찰참여 가능

< 지역의무 공동도급 및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금액 >

구분	국가	공공기관
지역의무 공동도급	고시금액(95억원) 미만	고시금액(284억원) 미만
지역제한 경쟁입찰	고시금액(95억원) 미만	150억원 미만

②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조정

- 지역의무 공동도급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지분비율을 40%(턴키·대안입찰은 20%)이상으로 상향조정
 - 턴키·대안입찰은 대형공사인 점을 고려
- * 일반사업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% 이상이어야 함
- * 4대강 사업시에도 지역업체의 참여지분비율을 상향조정 한 바 있음

3. 시행일 및 적용기간

- (시행일)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개정·시행된 날부터 시행
- (적용기간) 2011년 12월말까지 한시적 운용
 - 혁신도시사업에 대한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 적용기한인 2011.12.31.까지 운용

4. 신구조문 대비표

공동계약 운용요령: 지역의무공동도급

현행	개정(안)
<p>제9조(공동수급체의 구성) ⑥<생략> 2.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: 40% 이상(다만,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% 이상)</p> <p>⑦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2009.6.29.)</p> <p>제1조(시행일) 이 회계예규는 <u>2009년 6월 29일부터</u> 시행한다.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<u>2010년 12월 31일까지</u>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<u>2010년 12월 31일까지</u> 입찰공고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9조제6항제2호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.</p> <p>제3조(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.</p> <p>제4조(지역업체 소재기간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·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한다.</p>	<p>제9조(공동수급체의 구성) ⑥<현행과 같음> 2. <현행과 같음></p> <p>⑦ <현행과 같음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 (2011.2.1.)</p> <p>제1조(시행일) -----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2조제3항제2호 관련 부칙의 유효기간이 <u>2011년 12월 31일로 개정·시행된 날부터</u> -----.</p> <p>제2조(유효기간) ----- ----- <u>2011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, <u>2011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 <현행과 같음></p> <p>제4조 <현행과 같음></p>

